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

의 안 번 호 9380

제안연월일: 2025. 3.
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.

건 명	의안번호	발의자	발의일	전체회의 상정일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	4488	김남희의원 등 10인	'24. 10. 2.	'24. 11. 14.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	5585	김윤의원 등 23인	'24. 11. 14.	'25. 1. 14.

나. 다음 2건의 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 원회에 직접 회부함.

건 명	의안번호	발의자	발의일	소위원회 회부일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	7565	김미애의원 등 10인	'25. 1. 16.	'25. 1. 20.
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	7615	강선우의원 등 11인	'25. 1. 17.	

다.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1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(2025. 1. 22.)에서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.

건 명	의안번호	발의자	발의일	소위원회 심사일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	4488	김남희의원 등 10인	'24. 10. 2.	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	5585	김윤의원 등 23인	'24. 11. 14.	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	7565	김미애의원 등 10인	'25. 1. 16.	'25. 1. 22.
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	7615	강선우의원 등 11인	'25. 1. 17.	

- 라. 제421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(2025. 1. 23.)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- ※ 제421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(2025. 1. 23.)비용추계 생략의결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국가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 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보상을 하고 있음.

하지만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유행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, 예방접종을 받은 후 에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 보상을 청구하였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 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#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보 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대책을 수립·시행함(안 제3조).
- 다.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, 장애, 사망 및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고, 지원 필 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5조).
- 라.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(안 제6조).
- 마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, 의료적 판단 및 법률적· 사회정책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위원을 구성함(안 제7조).
- 바.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청구 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(안 제12조 및 제13조).

- 사.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, 이의신청건의 심의·의결은 재심 위원회에서 함(안 제14조 및 제15조).
- 아. 이 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보상을 금지함(안 제16조).
- 자.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벌칙을 규정함 (안 제17조 및 제19조).

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코로나19 예방접종"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.
- 2. "예방접종 후 이상반응"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그 예방접종 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의 책무)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,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- 제5조(국가의 피해보상 등) ①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, 장애, 사망(이하 "질병등"이라 한다)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.
  - 1. 질병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: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
  - 2. 장애인이 된 사람: 일시보상금
  - 3. 사망한 사람: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
  -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(제6조에 따라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제외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,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· 절차 및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인과관계의 추정)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.
  - 1.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

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

- 2.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
- 3.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,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
- ② 제1항에 따라 인과관계 여부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국내·외의 질병등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의 존재 여부,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 보유 여부 등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.
- 제7조(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) ①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(이하 "보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위원회 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.
  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인 및 약품 전문가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명
  - 2. 법학, 행정학, 사회학, 의학, 병리학, 약학, 미생물학, 면역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명

- 3.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명
-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이 추천하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명
- ④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⑤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수 있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위원의 결격 사유)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  -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.
- 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
  - 2.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- 3.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, 감정, 법률자문을 한 경우
  - 4.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

관여하였던 경우

- 5.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원으로 피해조사 를 한 경우
- 6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- ②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람(이하 '청구인'이라고 한다)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의견진술) ①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 - ②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에 담당 의료인, 그 밖에 해당 전문가(이하 "전문가 등"이라 한다)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, 위원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제11조(피해조사) 보상위원회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.
- 제12조(피해보상의 결정)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

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120일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기산하여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 ·검사·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피해보상의 결정과정에서의 통지 의무)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실과 법적근거 및 구체적인 이유(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)를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1.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
  - 2.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·검사·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결정에 대한 이의신청) ①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(이하 "이의신청인"이라 한다)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이

경우 이의신청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피해보상 청구"는 "이의신청"으로, "청구인"은 "이의신청인"으로 "보상위원회"는 "재심위원회"로 본다.
-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·절차,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재심위원회) ①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건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(이하 "재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단, 보상위원회 위원을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재심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.
  - ②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7조 및 제9조 중 "보상위원회"는 "재심위원회" 로. 제7조제3항 각 호 중 "5년 이상"은 "7년 이상"으로 본다.
- 제16조(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) 이 법에 따른 피해보상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 및 기타 국 가사업에 따라 이 법의 피해보상 또는 지원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

-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보상 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- 제17조(비밀유지의무)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- 제18조(위임 및 위탁)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9조(벌칙) 제1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.
- 제3조(보상결정 및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전에 「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전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4조(이의신청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전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이 법 시행 전에 「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이에 불복하여 그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